

『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2007. 12. 21 개정 공포된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에 의한 옥외광고 정비기금설치 신설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원활한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기금 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(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)
 - 구 성 :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
 - 기 능 : 심의기능
 -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
 - 기금결산보고서안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

- 임 기 :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
-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2007. 12. 21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 2 ‘옥외광고 정비 기금의 설치 규정’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원활한 정비를 통하여,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 · 운용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기금 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기금운용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(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)
-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○ 검토 결과는

- 본 제정 조례안은 2007. 12. 21 개정 공포된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기금을 마련 후 옥외광고물과, 간판의 정비, 도시경관 개선 등에 사용함으로써,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디자인 미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